

서울시소셜벤처허브센터 관리·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1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10월 17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서울시 소셜벤처 허브센터」는 이윤 추구만이 아니라 일자리·주거와 같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모델을 창출하는 기업(소셜벤처)을 서울시가 집중 육성하고자 처음 조성하는 시설로서
- 소셜벤처 전문보육시설(멘토링, 경영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) 및 기업간 협력 거점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자 함
- 나.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소셜벤처 육성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(신규)하여 관리 및 위탁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미리 얻으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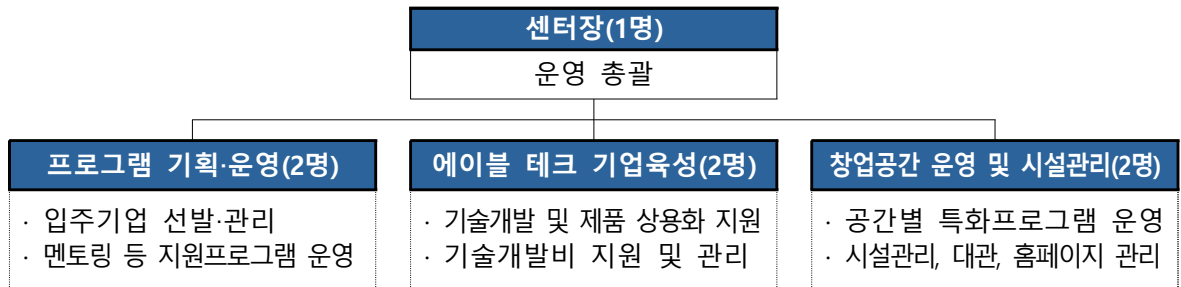
- 위치 :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93길 40 나라키움 역삼빌딩
- 시설규모 : 지상 3~4층, 약 1,408㎡
 - ※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간 제공
- 시설용도 : 소셜벤처 성장지원을 위한 사무공간 및 기업간 협력 거점
- 주요시설 : 기업 개별·공동 사무공간, 공동작업공간, 교육장(연수 시설 포함), 회의실, 커뮤니티 시설, 투자지원실 등
- 준공일 : 2018. 9월

나. 추진근거

- 「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」 제11조, 제14조 및 제16조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- 2018년 제6차 「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」 심의결과(적정) 통보 ('18. 9. 21., 조직담당관-11096)

다. 위탁내용

- 위탁사무 : 서울시 소셜벤처허브센터 관리 및 운영
- 위탁기간 : 2019. 3월 ~ 2022. 3월(3년간)
- 위탁유형 : 시설위탁(예산지원형)
- 사업수행기간 : 3년
- 수탁기관 선정방식 : 공모
- 조직 및 운영(안)



○ 위탁사무 내용

- 소셜벤처 허브센터 공간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
 - 소셜벤처기업 창업 육성사업 및 입주기업 전문보육(투·융자 연계)
 - 에이블테크 특화 창업보육공간 운영 및 에이블테크 소셜벤처 육성
 - 기업 기술개발 및 제품 상용화 지원, IT 기술 기반 특화 테스트랩, 시제품 제작소 등
 - 투자·컨설팅·멘토링 등 지원, 교육·홍보 등
- 시설 관리 : 유지보수, 대관, 청소·보안 용역 발주 등

○ 소요예산 : 연 2,000백만원

라. 민간위탁 필요성

- 소셜벤처는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모델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도 높으나 정책적·제도적 지원정책이 부족하여 성장에 한계가 있음
-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소셜벤처 육성에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허브센터 관리·운영을 위탁하여, 소셜벤처의 투자 유치 및 판로를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지원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04조 (사무의 위임 등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

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-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

제11조(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부문별 지원기관) ② 시장은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부문별 특성을 감안한 기업 육성을 위하여 그 육성업무의 일부를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3조(지원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) ⑤ 시장은 지원센터 및 부문별 지원기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4조(경영지원 등)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통합적인 경영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, 관련 법규에 따라 경영·법률·기술·세무·노무·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6조(재정지원 및 기금의 설치)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훈련 및 연구
5.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
7. 사회적경제조직 공간 지원
8.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 지원

나. 예산조치 : '19년 예산편성 추진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정책팀 김태형(☎2133-5483)